

1. 개정이유

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·재료·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을 삭제하고 납부횟수를 연 4분기에서 6회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(100만원 이상)을 삭제하고 납부횟수를 연 4분기에서 6회로 확대함(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-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영 제12조제4항”을 “공단은 영 제12조제4항”으로, “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, 연 4분기”를 “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 6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기분”을 “제1회분”으로, “제2기분”을 “제2회분은 해당 연도 6월 20일까지로, 제3회분”으로, “제3기분”을 “제4회분은 해당 연도 8월 20일까지로, 제5회분”으로, “제4기분”을 “제6회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) ①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폐기물부담 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 정하고, 연 4분기로 똑같이 나 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. ② 영 제12조제4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 한은 제1기분은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로, 제2기분은 해당 연 도 7월 20일까지로, 제3기분은 해당 연도 9월 20일까지로, 제4 기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 지로 한다. ③ · ④ (생 략)	제7조(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) ① 공단은 영 제12조제4항 --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 물부담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연 6회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-- 제1회분----- ----- 제2회분은 해당 연 도 6월 20일까지로, 제3회분--- ----- 제4회분은 해당 연도 8월 20일까지로, 제5 회분--- 제6회분----- ----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